

의안번호	2200527
의 퇴 인	용혜인 의원
회 답 일	2024.07.05.
추계번호	24C09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금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9.1조원, 2029년 16.1조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8.1조원(연평균 17.6조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 제4조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 중 “추가로”를 삭제하여, 해당 아동에게는 제1항의 아동수당이 아닌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19.1	18.3	17.6	16.9	16.1	88.1	17.6
- 국비	14.4	13.9	13.3	12.8	12.1	66.5	13.3
- 지방비	4.7	4.5	4.3	4.1	3.9	21.5	4.3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0~17세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안 제4조제5항의 ‘추가’지급 조항삭제로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되, 24년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며, 개정안 시행 이후 제도설계에 따라 결과값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u>18세 미만</u> 의 아동에게 <u>매월 30만 원</u> 을 지급한다.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u>지급한다</u> .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3.12.)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며, 국고보조율과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아동 수를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24년 예산 기준 국고보조율 75.55%를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외에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모급여, 2024년 기준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현행 부모급여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을 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하고,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안 제6조 단서 신설에 따라 14세 이상 아동은 아동수당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률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기존 지급률(2024년 기준 97.2%)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인 2~17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비용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인 기존 0~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17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며, 해당 아동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출

[표 2]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천명, 만원, 개월, %,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지급대상자 수(A)	6,180	5,925	5,692	5,466	5,216	28,478	5,696
월 지급액(B)	30	30	30	30	30	-	30
지원개월 수(C)	12	12	12	12	12	-	12
평균 지급률(D)	97.2	97.2	97.2	97.2	97.2	-	97.2
합계(A×B×C×D)	21.6	20.7	19.9	19.1	18.3	99.7	19.9
- 국비	16.3	15.7	15.0	14.5	13.8	75.3	15.1
- 지방비	5.3	5.1	4.9	4.7	4.5	24.4	4.9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8세 미만 아동수에 1인당 월 지급액 10만원을 곱하여 산출

[표 3]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 : 2025~2029년

(단위: 천명, 만원, 개월, %,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급대상자 수(A)	2,177	2,046	1,953	1,898	1,872	9,946	1,989
월 지급액(B)	10	10	10	10	10	50	10
지원개월 수(C)	12	12	12	12	12	60	12
평균 지급률(D)	97.2	97.2	97.2	97.2	97.2	—	97.2
합계(A×B×C×D)	2.5	2.4	2.3	2.2	2.2	11.6	2.3
— 국비	1.9	1.8	1.7	1.7	1.6	8.8	1.8
— 지방비	0.6	0.6	0.6	0.6	0.5	2.8	0.6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8.1조원(연평균 17.6조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A)	21.6	20.7	19.9	19.1	18.3	99.7	19.9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B)	2.5	2.4	2.3	2.2	2.2	11.6	2.3
추가재정소요(C=A-B)	19.1	18.3	17.6	16.9	16.1	88.1	17.6
— 국비	14.4	13.9	13.3	12.8	12.1	66.5	13.3
— 지방비	4.7	4.5	4.3	4.1	3.9	21.5	4.3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